

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청년아동과

제정 1996·12·26 조례 제 178호
개정 2009·7·30 조례 제 776호
일부개정 2014·10·15 조례 제1062호
(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7·9·29 조례 제1337호
일부개정 2017·12·28 조례 제1364호
(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·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·7·30>

제2조(지도위원의 위촉)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,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지역 내 청소년 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, 읍·면·동장,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[전문개정 2009·7·30]

제3조(지도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7·9·29>
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제4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.

1. 청소년의 보호·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
2.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·장려 및 지원

- 3.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
- 4.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
- 5.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·선도·지도 및 정화활동
- 6.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·지원 활동 등

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12·28>

제5조(지도위원의 수) 지도위원의 수는 읍·면·동별로 10인이하로 하되, 당해 읍·면·동의 자연환경, 인구, 학교위치,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제6조(증표교부)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7조(필요경비등 지원)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·여비·교육기회의 제공·표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임기)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)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, 읍·면·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·7·30 조례 제77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10·15 조례 제1062호,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·9·29 조례 제133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7·12·28 조례 제1364호,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
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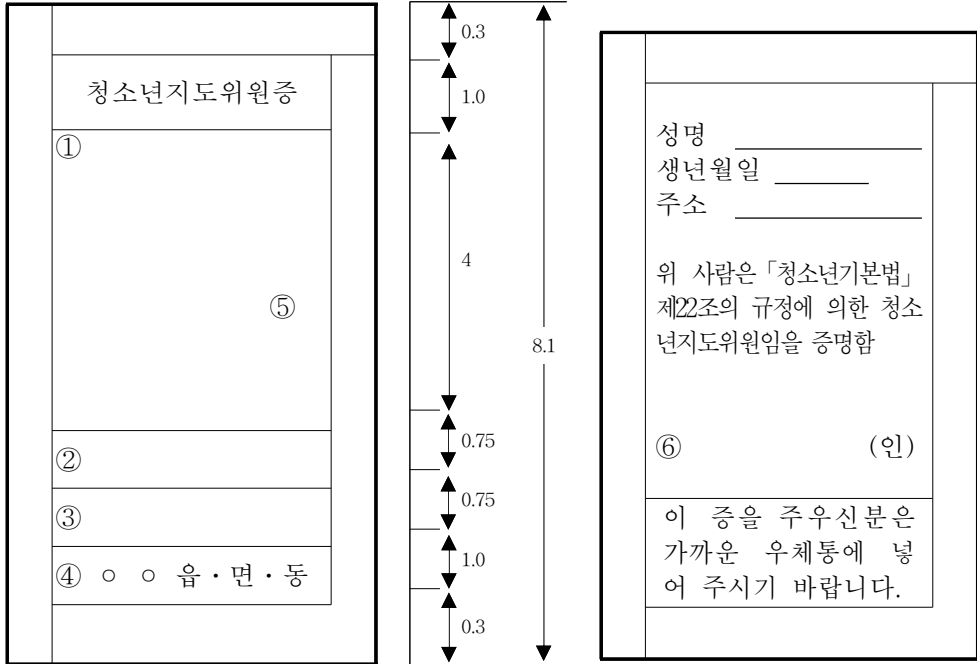
[별표] <개정 2014·10·15>

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(제6조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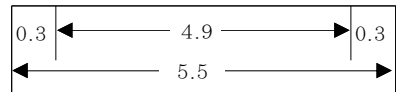
(앞 면)

(단위 : cm)

(뒷 면)



4.9 × 7.5



(비 고)

1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02g/m²으로 한다.
2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
- ① 사진(4.9cm × 4cm)
-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
- ③ 성 명
- ④ 소속기관명
- ⑤ 철인(발급기관의 철인)
-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